

사 규 명	이사회 규정	사규번호	HR-301	
기안부서	전략기획실	개정주기	필요 시	
공개여부	공 개	제정일자	2021.03.12	
제•개정 이력				
구분	제•개정		년월일	제•개정내용
	전면	부분		
0	○		2015.09.01	이사회 규정
1		○	2021.03.12	제 10 조[부의사항] 제 ①항 및 부칙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
9				
10				
11				
12				
13				
14				
15				
관 련 규 정			승인자	 사 장
			검토자	
			작성자	

	사 규 이사회 규정	사규번호 : HR-301 개정일 : 2021.03.12 페이지 : 2 / 6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 목 적 】

이 규정은 주식회사 한국카본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 적용범위 】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【 권 한 】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【 구 성 】

이사회는 등기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【 의 장 】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의장이 사정에 의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【 종 류 】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주총, 배당, 재무제표 승인 등 정기적 의안 결정시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-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 조 2 항에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【 소집절차 】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(1 주간)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통지는 전자우편, 통신기기,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토록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
제 9 조 【 결의방법 】

-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 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, 외부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제 10 조 【 부의사항 】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-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1-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 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 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 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 - (9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 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 - (12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 - (14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 - (15) 법정준비금의 감액
 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2. 경영에 관한 사항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2) 공동대표의 결정
 - (3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4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(5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 - (6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3. 재무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3.12>
- (1)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, 출자지분의 처분, 채무인수, 채무면제,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,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,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, 증권대여 등
 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 - (3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 - (4) 결손의 처분
 - (5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시설투자
 - (6) 신주의 발행
 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 - (9) 전환사채의 발행
 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- (11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
 - (12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 등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5. 기 타 <개정 2021.03.12>
- (1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(2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(3) 본 조 제 1 항의 이사회 부의사항 이외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한다.

	사 규 이사회 규정	사규번호 : HR-301 개정일 : 2021.03.12 페이지 : 5 / 6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.
2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 조 【 감사의 출석 】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2 조 【 관계인의 출석 】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 조 【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】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구할 수 있다.

제 14 조 【 의사록 】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(별첨 1)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5 조 【 간 사 】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경영지원본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고,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이 지정한 사내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 칙

[부 칙 1] <제정 2015.09.01>

제 1 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	사 규 이사회 규정	사규번호 : HR-301 개정일 : 2021.03.12 페이지 : 6 / 6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부 칙 2] <개정 2021.03.12>

제 1 조 [시행일]

이 규정은 2021년 0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